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숭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67

발의연월일: 2022. 3. 25.

발 의 자:최승재·권명호·김기현

김미애 · 이철규 · 정우택

이주화 • 정동만 • 한무경

양금희 • 이종배 • 최춘식

의원(12인)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사용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관광업·공연기획업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둘째,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셋째,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 부칙제2조 단서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넷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20 2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나. 소상공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 후단 신설).
- 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2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제2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을 "인원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으로, "해당 소상공인"을 "해당 소상공인(해당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서 해당 지원 금액을 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	①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조치로서 <u>영업장소 사용 및</u>	인원 제한 또는 <u>영</u>
<u>운영시간 제한</u> 등 대통령령으	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
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	<u>한</u>
공인에게 <u>경영상</u> 심각한 손실	<u>직접적 또는 간접</u>
이 발생한 경우 <u>해당 소상공인</u>	<u>적으로 경영상</u>
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u>해당 소상공인(해</u>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u><후</u>	당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
<u>단 신설></u>	<u> 공인을 포함한다)</u>
	<u>이 경우 손실보상</u>
	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소상
	공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
	실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u>있다.</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